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의결년월일	2000. 1. 21 (제76회)

제안년월일 : 2000. 1. 18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91호)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국외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지급항목의 명칭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2조제2항)
- 제3조의 제목을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 중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2항)
- 의원이 공무로 국외로 여행할 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퍼센트 인상함(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일부 미확보(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은 차기 추경예산에 확보)
-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동조제2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2”의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 비	숙 박 비
의 장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부 의 장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의 원	가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30	나등급 86
	다등급 30	다등급 64
	라등급 30	라등급 56

동조동항 “별표 2”의 비고 2에서 “여행지에서 1의 수도까지의”를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의정활동비) ①(생략) ②의정활동비는 매월 350,000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현행과 같음) ②.....550,000원.....
제3조(회의수당) ①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	제3조(회기수당)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1일에 대하여 원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의기수당.....70,000원.....
--	---

[별표 2]

국외여비기준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35	137	151	107	140	170	195
나등급					25	35	99	109	78				
다등급					25	35	76	84	58				
라등급					25	35	65	72	49				
부의장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20	30	120	132	81	130	155	180
나등급					20	30	78	86	59				
다등급					20	30	58	64	44				
라등급					20	30	51	56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